

제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우리회사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일시 : 2019년 3월 27일 (수) 오전 09시
2. 장소 :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6로 71 (주)메디톡스 오송공장 2층
3. 회의의 목적사항
 - 가) 보고사항 : ①감사보고 ②영업보고 ③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
 - 나) 부의안건
 - 제1호 의안 : 제1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(주식배당 주당 0.03주)
 - 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 - 제3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(사내이사 1명)
 - 제4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 - 제5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4.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사항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및 공고사항을 당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,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당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가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.
6. 기타사항
제19기 배당은 주당 0.03주 주식배당을 예정하고 있으며, 주주총회에서 확정시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.
7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직접행사 : 신분증
대리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감, 인감기재, 인감날인), 대리인의 신분증
8. 기타사항
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.

2019년 3월 12일

주식회사 메디톡스
대표이사 정현호(직인생략)

◆제2호 의안 : 관 일부 변경의

현행	개정(案)
제 2 조(목적)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 1. 의약품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제조업 2. 의약품 (생략) 18. 위 각호와 관련한 무역(수출 및 수입)업 19. 위 각호와 관련한 도매 및 소매업 20.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	제 2 조(목적)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 1. 의약품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제조업 2~17. (현행과 같음) 18. 통신판매업 19. 위 각호와 관련한 무역(수출 및 수입)업 20. 위 각호와 관련한 도매 및 소매업 21.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
제 8 조(주권의 발행과 종류) ① 회사는 보통주권과 종류주권을 발행한다. ② 주권의 종류는 1주권, 5주권, 10주권, 50주권, 100주권, 500주권, 1,000주권, 10,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.	제 8 조 삭제 <2019.3.27>
제 9 조(주권) <신설> 주권	제 8 조의 2(주식등의 전자등록) 회사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 1 조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.
제 15 조(명의개서대리인) ① ~ ② (생략)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, 주식의 명의개서, 주권의 발행, 기록 또는 말소, 신주발행의 표시 또는 말소, 주권의 발행, 신주의 접수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하여금 취급케 한다.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규정(規定)에 따른다.	제 15 조(명의개서대리인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, 주식의 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관리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하여금 취급케 한다.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규정(規定)에 따른다.
제 16 조(주주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)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,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 ③ 제 1항 및 제 2항에 정한 사항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	제 16 조 삭제 <2019.3.27>

제 17 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 ① ~ ② (삭)	제 17 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회의 결의로 3 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금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이사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사 는 이를 호일 2 주간 전에 공고한다.	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회의 결의로 3 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금지하거 나, 이사회회의 결의로 3 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 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제 22 조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 제 15 조(명의개서), 제 16 조(주주 등의 주소, 성명 및 인 감 또는 사경 등의 신고)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	제 22 조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 제 15 조(명의개서)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 다.
제 23 조(소집시기)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. ② 정기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 월 이내에, 임시주 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	제 23 조(소집시기)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. ② 정기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 개월 이내에,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제 55 조(외부감사인의 선임)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 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(또 는 감사위원회)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, 그 사실을 외부 감사인을 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	제 55 조(외부감사인의 선임)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인선 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 고,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 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
부칙 <신설>	기 정관은 2019 년 3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8 조, 제 8 조의 2, 제 15 조, 제 16 조 및 제 22 조의 개정 규정은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이 시행 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◆ 제3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(사내이사 1명)

<사내이사 후보>

성명 (생년월일)	학력 및 주요 약력	추천인	최대주주 와의 관계	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	임기	국적	비고
양기혁 (1969.2.8)	한국과학기술원 이학박사 미시건주립대학교 Post-Doc 한국생명공학연구원 Post-Doc 현)메디톡스 부사장	이사회	없음	없음	3년	대한민국	재선임